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준호 의원 외 25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47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2.

### 2. 제안사유

-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,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.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
- 이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 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

의 안전을 확보하고,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7호)
- 나.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(안 제12조의2제4항)
- 다.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제5항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4. 5. ~ 4. 9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<sup>1)</sup>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을 인지하기 위해 '서울공공자전거 앱'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표출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공감하며,
- 현재, 공공자전거 '따릉이 앱'에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상시 표출 중이고, 민간플랫폼 앱에도 안전수칙이 공지·표출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음

---

1) 보행자전거과-5135(2025.4.8.) “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”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통행원칙 및 이용자 안전수칙 등의 교통법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이용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(이하 ‘앱’이라 함)에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출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공공자전거 앱에도 이를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■ 용어 신설 관련(안 제2조제7호)

- 안 제2조제7호는 서울공공자전거(일명 “따릉이”)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,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‘서울공공자전거 앱’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민간회사에서 운영<sup>2)</sup>하는 시스템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
(별첨자료 참조)

2) 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

- 민간 공공자전거 앱 :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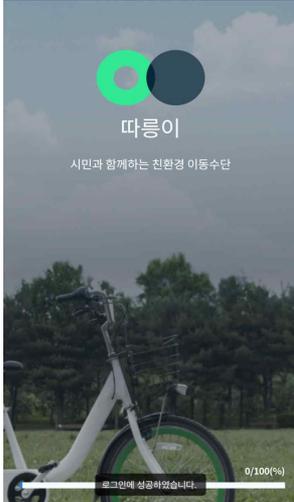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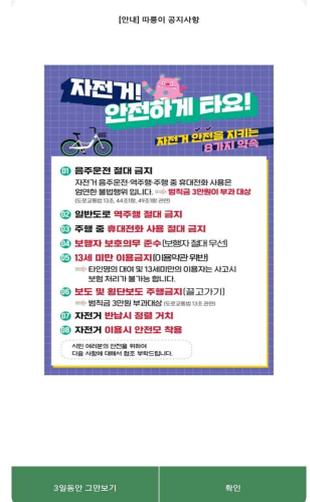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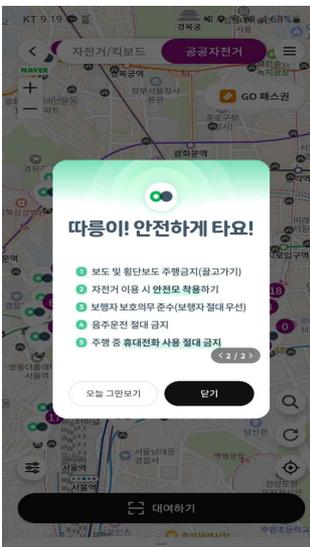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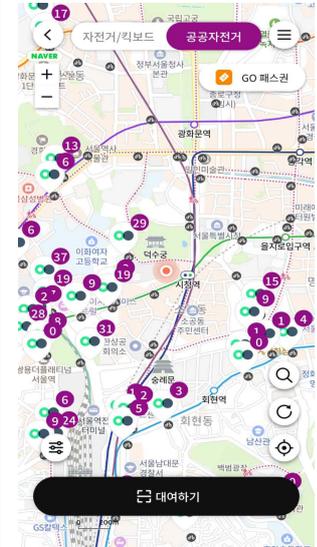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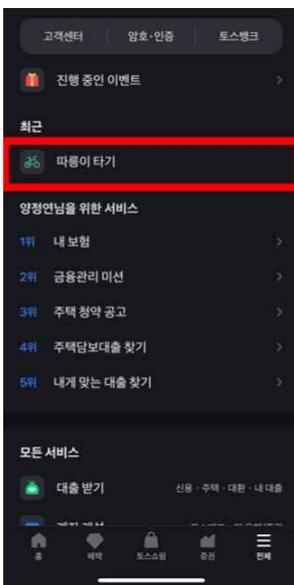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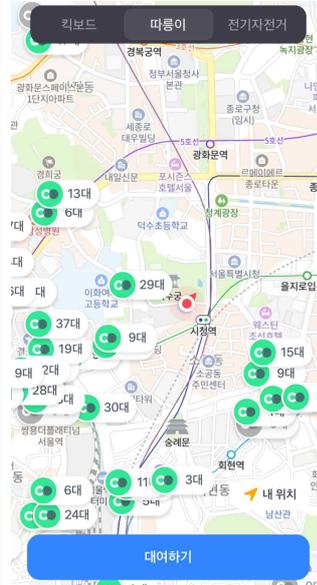
■ **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표출 관련(안 제12조의2제4항, 제5항)**

- 안 제12조의2제4항은 이용시민이 공공자전거 이용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‘서울공공자전거 앱’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- 서울시도 최근 공공자전거 통행원칙 등을 이용시민에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‘서울공공자전거 앱’ 사용시 공공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규를 표출하고 있음
- 다만, 서울시가 해당 앱에서 “3일 동안 그만보기” 기능을(별첨자료 참조) 제공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시민들이 해당 법규 숙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해당 기능을 제거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시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- 안 제12조의2제5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

고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하여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과 연계한 '민간 공공자전거 앱(별첨자료의 토스 앱)'에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표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는 것임

- 시장이 민간 플랫폼 사의 공공자전거 앱에 공공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 통행규칙 및 안전수칙 등 관련법규를 표출토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강제규정 아닌 임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된다 할 것임
- 다만,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민간 플랫폼사와 연계할 경우 관련법규 등을 상시 표출하는 조건으로 서울공공자전거 시스템의 연계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

※ 별첨자료 : 공공자전거 앱별 안전수칙 안내현황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앱 초기화면  | 안전수칙(팝업)   | 이용화면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<p>서울공공<br/>자전거 앱<br/>(따름이)</p> |    |    |    |
| <p>티머니 앱<br/>(공공자전거)</p>        |   |   |   |
| <p>토스 앱<br/>(따름이 타기)</p>        |  |  |  |